

개인훈련계획서

(제1쪽)

① 인적사항

성명	(한글) (영문)	주민등록번호	
주소			
연락처	(주택) (휴대폰)	이메일	@
훈련예정시기	2021년 09월	취업예정시기	년 월
은행계좌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한 <input type="checkbox"/> 농협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 <input type="checkbox"/> SC <input type="checkbox"/> 우체국 (계좌번호)		

② 주요이력

훈련경력	훈련종류	훈련기관명	훈련과정명	훈련기간	수료여부

③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분야

구분	업종(직종)	업무분야
취업		
창업		

④ 훈련참여 과정

구분	훈련방법 (집체, 인터넷, 혼합 등)	훈련기관명	훈련과정명
최초			
1차 변경			
2차 변경			

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

<권리사항>

-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는 200만원(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는 300만원)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(지원한도는 제적, 계좌중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·소멸됨)
 - *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은 훈련비 전액 지원(훈련비는 계좌지원한도에서 차감됨)
- ② 훈련생은 상담원과 협의하여 취업분야를 결정하고 취업가능성,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최대 5개 과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시 단위기간별(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)로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(1일 5시간 미만 2,500원(월 50,000원 한도), 1일 5시간 이상 5,800원(월 116,000원 한도))이 지급됩니다.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훈련장려금*이 실업자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. 다만, 구직급여 수급자나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(★중요. 수강평 미입력시 마지막달 훈련장려금 미지급)
 - *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시 단위기간별(훈련시작일부터 매1개월)로 소정출석일수의 80%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없는 훈련생은 월 20만원,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10만원, 대학교 재학생은 월 12만원,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는 월 30만원(최대 6개월, 고등학생은 20만원) 지급. 단, 실업자훈련 합산하여 2회차인 경우는 동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3회차는 지급하지 않음
 - ※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.
- ④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받은 과정의 직종과 동일직종(국가직무 능력표준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, 훈련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('16년부터 6개월) 고용유지기간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**3년간** 또는 창업하고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자비 부담액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. 다만,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(근로계약서, 사업주확인서 등)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의무사항>

- ① 상담원과 최초 합의된 훈련과정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 상담을 통해 최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, 취업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취·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②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**계좌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차감**됩니다. 만약, 부득이한 사유로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.
- ③ 계좌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(수강포기 포함) 또는 제적된 이력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와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대리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 잔액 소멸)되며 실업자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 (재)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단,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유인 경우에는 유선 상담으로도 재사용 가능
- ④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중 훈련직종에 따라 20% ~ 50%(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10% ~ 30%)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본인부담액을 뺀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출산 및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잔여 유효기간 범위에서 계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- ⑥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즉시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해당 훈련과정은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훈련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으며,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는 계좌사용이 중지되므로 새로 시작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⑩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.
- ⑦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후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 유효기간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실직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⑧ 한번 수강한 훈련과정은 다시 수강할 수 없으나, 출산·상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담을 거쳐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.
- ⑨ 훈련생은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내(중도탈락한 경우 중도탈락한 날부터 30일내)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(HRD-Net)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며,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⑩ 직업능력개발계좌 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, 부정 출석에 사용시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.
- ⑪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.
이때 반드시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체크카드의 경우 연결된 은행(신한, 우리, SC, 우체국, 농협) 계좌에 본인부담금 20% ~ 50%(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는 10% ~ 30%)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.
- ⑫ 훈련생은 훈련수강시마다 반드시 계좌카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여야 하며,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의 부주의로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 결석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⑬ 훈련생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숙련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 되거나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석하거나,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<제적사유 : 무단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,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,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, 대리 출석체크 시 대리출석을 한 훈련생과 대리출석을 부탁한 훈련생>

<기타 안내>

-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,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.
- 신용카드의 경우 초년도에 한해서 연회비 3,000원이 부과됩니다.
- 훈련생 자비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계좌카드 발급을 위해 위 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금융기관(신한카드, 농협카드)에 제공·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
「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.

	년	월	일
직업능력개발계좌			
취 득 자			(서명 또는 인)
계좌사용 유효기간(년	월	일 ~ 년 월 일)
○○ 지방고용노동관서			(서명 또는 인)
담당 상담원 (Tel:)			(서명 또는 인)

